



‘AT&T’의 해체와 그 의의

홍명수 | 명지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I. 서론

1984년 연방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통하여 방대한 자산과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AT&T는 해체되었다. 동 사건의 의의는 우선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재편을 시도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AT&T의 해체가 통신산업의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이하에서는 AT&T로 대표되는 미국 통신산업의 발달과정, AT&T의 해체에 이르게 된 배경과 구체적 경과, 해체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AT&T’ 해체의 의의를 검토할 것이다.

II. 전제적 고찰: 미국 통신산업의 발달과 AT&T의 성장

1. 미국 통신산업의 형성과 발달

미국에서는 1836년 Samuel Morse에 의하여 전신(telegraph)이 개발된 이후 통신의 상업적 이용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였으며, 1850년대에 이르러 Western Union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1876년 Alexander G. Bell이 음성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이후, 통신산업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1877년 설립된 Bell Telephone Company는 기존의 전신과는 별개의 전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Western Union과의 사업영역의 분리를 약정한 후에 전화사업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¹⁾ 최초의 전화서비

1) Dick W. Olufs III., The Making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Lynne Rienner Publishers, 1999, 29-30면.

스는 전화선이 직접 연결된 관계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정한 지역에 전화교환소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가입자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자리잡게 됨으로써, 전화의 이용은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 1880년 Bell Telephone Co.는 American Bell Co.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운영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전화교환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지역회사에게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고 대신에 지역간의 장거리교환은 Bell Co.가 전담하는 시스템이 성립하게 되었다. 조직적으로는 통신장비 제조회사인 Western Electric을 인수하여 배타적인 상호거래관계를 확립한 것과,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New York과 Philadelphia 사이의 장거리전화를 담당하는 AT&T Co.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전화망의 시초를 열었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써 100년 이상 지속된 Bell 시스템이 완성되었다.²⁾

2. 통신산업의 규제산업적 성격의 승인

1894년 Bell의 특허권이 소멸하면서, 통신산업 구조는 급격히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19세기 종료되는 시점에 Bell 시스템 외부에 있는 독립된 전화회사의 수는 500여개에 이르렀으며, 1907년에는 독립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49%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독립회사들이 연합하여 장거리 전화를 담당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AT&T는 각 지역회사들을 인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고, 이로써 독점금지법적인 관점에서 통신산업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³⁾ AT&T는 통신산업이 경쟁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규제산업에 해당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의도는 1913년 법무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맺은 Kingsbury 약정에 반영된다. 이 약정에서 AT&T는 조사중에 있는 전신회사에 대한 통제를 중단할 것, 독립회사들에게 Bell network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그리고 규제당국의 동의하에서만 독립회사들을 인수할 것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정부는 통신산업이 자연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규제산업의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⁴⁾ 이후 통신 network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의무(universal service)의 개념,⁵⁾ 1차 세계대전 동안 산업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의 강

2) Gerald W. Brock, *Telecommunication Policy for the Information Age*, Harvard Univ. Press, 1994, 63-65면 및 김정수,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일신사, 1996, 80-84면 참조.

3) Dirk W. Olufs III., 주 1)의 책, 30-32면.

4) 위의 글, 32-33면.

5) 보편적 의무(universal service)의 개념은 1907년 AT&T Co.의 대표였던, Theodore Vail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초기에 '보편적 의무'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통신망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독점화의 근거가 되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공정



화, 그리고 적어도 통신산업의 국유화는 피하고자 하는 사고의 확산에 의하여 통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산업의 논리는 강화되었다.⁶⁾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AT&T는 통신산업에 대한 지배를 정부와 분점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경쟁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는 유지될 수 있었고 또한 지속적인 독립회사들의 인수를 통하여 강화되었다.⁷⁾

이러한 구조는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의 제정에 의하여 입법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동 법은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기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전속적인 규제기관으로서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창설하였고,⁸⁾ 새로운 용역의 제공과 그 주체를 승인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해에 따른 필요성과 타당성(necessary and desirable)'의 기준(201조 a항), 그리고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just and reasonable)'의 기준(201조 b항)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은 구체적인 내용의 보충을 요하는 추상적인 것이었지만, 진입·가격과 같은 핵심적 요소들이 시장의 자율이 아니라 규제기관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규범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⁹⁾

3. 통신산업의 구조적 변화

2차 세계대전 이후 통신산업의 구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으며, 법무부가 1949년 AT&T의 자회사인 Western Electric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소송이 그 발단이 된다. 이때 정부가 문제삼았던 것은 전화요금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히 요금 산정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초점이 모아졌다. 법무부는 AT&T의 자회사인 Western Electric이 지역전화회사들에 대한 통신기기의 공급을 독점하고, 이 때 독점가격이 설정됨으로 인하여 고율의 전화요금

(equity)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모든 사람이 전국 어디에서나 적절한 설비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동 개념은 보조금의 지급이나 가격차별을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인용되었다. Thomas G. Krattenmaker,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1998, 350-352면.

6) Dirk W. Olufs III., 주 1)의 책, 33-34면.

7) 위의 책, 34-35면.

8) 당시 Roosevelt 대통령은 Communications Act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단일한 규제기관(single Government agency) 창설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Mark J. Becker,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Walt Saprnov & William Read ed., *Telecommunications: Law, Regulation, and Policy*, Ablex Publishing Co., 1998, 17면.

9) 통신산업은 자연독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1934년 Communications Act의 명백한 전제였다는 것에, Michael K. Kellogg, John Thorne & Peter W. Huber,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20-21면.

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estern Electric을 분리하여 통신기기 시장을 경쟁구조로 재편할 것을 의도하였다.¹⁰⁾ 그러나 냉전의 격화로 통신부분의 연구개발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지면서, 동의판결로¹¹⁾ 확정된 동 사안에서 AT&T의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판결은 결국 AT&T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 체제의 유지를 승인하였으며, 단지 Computer 등 다른 산업에의 진출을 제한하는 조건만을 부과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신부문에서의 기술의 발달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유력한 동인이 되었다. 물론 Bell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개발은 여전히 통신산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성과는 Bell 시스템 외부에도 존재하였다.¹³⁾ 우선 Hush-A-Phone이나 Carterfone과 같은 새로운 통신기기의 개발은, 이들 기기가 기존의 Western Electric의 통신기기와 결합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¹⁴⁾ FCC의 결정에 의하여 이들 기기를 개발한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¹⁵⁾ 또한 MCI에 의하여 장거리통신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단파기술이 개발됨으로써, FCC는 이 방식에 의한 장거리통신사업에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¹⁶⁾ 1970년대에 이르러 AT&T Co.에 의한 거대한 독점체제가 통신산업의 구조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관한 우려가 폭넓게 자리잡으면서 정부는 1974년 다시 AT&T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제기하였다. 8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1982년 역시 동의판결에 의하여 지역별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던 모든 자회사들이 분리가 확정됨으로써 1984년 AT&T는 해체에 이르게 된다.

10) 위의 책, 202-203면 및 Gerald W. Brock, 주 2)의 책, 70-71면.

11) U.S. v. Western Electric Co., 68, 246 (D.N.J. 1956).

12) Michael K. Kellog, John Thorne & Peter W. Huber, 주 9)의 책, 203-204면 및 Gerald W. Brock, 주 2)의 책, 71-72면.

13) Michael K. Kellog, John Thorne & Peter W. Huber, 주 9)의 책, 22-24면.

14) Hush-A-Phone Corp. v. U.S. 238 F.2d. 266(D.C. Cir. 1956). 동 사건은 다른 통신기기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AT&T의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Hush-A-Phone Corp.가 FCC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FCC가 Hush-A-Phone Corp.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1955년), 이에 대하여 Hush-A-Phone Corp.가 연방순회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동 판결은 1956년 1월에 있었던 전술한 ‘동의판결’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15) Gerald W. Brock, 주 2)의 책, 82-85면.

16) 위의 책, 111-116면.



III. AT&T에 대한 반독점소송의 전개과정

1. 경쟁정책적 개입의 확대과정

미국의 통신산업은 대부분의 다른 서구국가와는 달리 국유화되지 않고 민간부문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AT&T가 해체되기 이전에 통신산업이 경쟁적인 구조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전술한 것처럼 정부의 개입이 유보된 규제산업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하의 독점적 구조'가 유지된 것은, 통신서비스의 효용은 많은 사람들이 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통신산업은 광범위한 통신망의 구축이 필수적인 자연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여러 통신망을 거쳐 통신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로부터의 수익에 관한 사업자들 사이의 약정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통신기기의 제조, 장거리통신, 지역통신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가 통신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¹⁷⁾ 또한 이러한 근거는 다른 한편으로 통신산업과 AT&T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소극적 적용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변화를 포함한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산업구조와 이에 대한 법정책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한다.¹⁸⁾ 예를 들어 1984년 AT&T의 해체 이후 장거리 통신산업에 진출한 Sprint Co.는 1980년대 후반 3년의 기간 안에 저렴하고 기능이 뛰어난 신소재인 광섬유에 의하여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포괄하는 통신망을 시설하였다는 사실은,¹⁹⁾ 더 이상 광범위한 통신망의 구축이 자연독점의 근거로서 원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82년 AT&T의 해체판결이 있기 이전에도 독점금지법에 의거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다. 특성상 경제적 규제와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산업도 상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양자의 긴장관계가 노정된다. Sullivan & Harrison은 규제산업에 있어서 법원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의회의 승인 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독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회가 경쟁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시

17) 위의 책, 61-63면.

18) 이에 관하여 규제당국의 판단이 시장과 경쟁에 의한 결정보다 우월할 경우에만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에 E. Thomas Sullivan & Jeffrey L. Harrison, *Understanding Antitrust and Its Implications* 2. ed., Matthew Bender, 1994, 56-57면.

19) 城所岩生, 미국통신전쟁: 신통신법으로 변화하는 구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 132-133면.

하고 있다.²⁰⁾ 그러나 명문의 규정에 구속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기준 자체도 유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신산업의 경우 1910년대 초반 반독점소송은 1912년의 Kingsbury 약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지만, 1920년대 AT&T의 영화산업에의 진출은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정부의 반대에 의하여 좌절되었다.²¹⁾ 또한 AT&T 체제를 유지한 1956년의 동의판결도 AT&T가 독점력으로서 다른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1982년의 해체판결은 통신산업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려는 오랜 시도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실현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²²⁾

2. AT&T 해체소송의 구체적 경과

1974년 11월 법무부의 AT&T에 대한 반독점소송이 제기된 이후, 양자가 실질적인 합의과정에 들어간 것은 1981년 1월이다. 이 절차는 Washington 연방지방법원의 Greene 판사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1982년 8월 1956년의 동의판결을 수정하는 '수정동의판결'이²³⁾ 이루어지고, 이는 1983년 2월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다.²⁴⁾

IV. AT&T 해체의 내용

1. AT&T 해체의 기본 목적

1974년 AT&T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서 법무부가 독점금지법적 관점에서 문제삼았던 것은 특히 독점력의 이전에 관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통신산업을 크게 장거리통신시장, 지역통신시장 그리고 통신장비(customer premises equipment: CPE)의 공급시장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

20) E. Thomas Sullivan & Jeffrey L. Harrison, 주 18)의 책, 55-56면.

21) Dick W. Olufs III., 주 1)의 책, 34면.

22) Dick W. Olufs III., 주 1)의 책, 42-46면.

23) 552 F. Supp. 131 (D.D.C. 1982). 이와 같이 AT&T를 해체하는 판결은 1956년 AT&T 체제의 유지를 지지하였던 New Jersey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정동의판결'의 의의에 관해서는, Phillip Areeda & Louis Kaplow, Antitrust Analysi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8, 73면 참조.

24) 460 U.S. 1001, 1101-1105 (1983).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수정동의판결'이 동의판결서 요구되는 Clayton법 제5조 e항의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상소심에서, 연방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서 지역통신시장에 대해서는 자연독점적인 성격을 인정하였지만, 장거리통신시장과 통신장비 시장은 잠재적인 경쟁시장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무부는 AT&T가 지역 통신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다른 시장에 이전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Sherman법 제2조의 독점 및 독점화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⁵⁾ 결국 법무부는 위에서 언급한 세 시장을 각각 분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AT&T와의 합의를 거쳐 1982년의 '수정동의판결'에 의하여 이를 실현하게 되었다.

2. AT&T 해체의 구체적 내용

1984년 1월 AT&T 전체 자산의 85%를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지역별 자회사들이 AT&T로부터 완전 분리되었고, 이로써 AT&T는 실질적인 해체에 이르게 된다.

AT&T는 미국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4개의 지역별 자회사 중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22개의 주식을 spin-off 방식으로²⁶⁾ 양도하였고, AT&T와 자회사들 사이에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소멸되었다. 분리된 22개의 자회사들은 7개의 권역별로 결합하여 독립된 회사로 재편성되면서 이들 지역별 자회사들 사이에서도 자산과 인력 등에 관한 분할이 이루어졌으며,²⁷⁾ 또한 각각의 통신망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독립된 지역별 회사에 대한 사업범위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통신장비의 생산이 여전히 금지되는 대신에 판매 및 대여를 할 수 있었고, 정보통신 분야 등에의 진출은 제한되었으며, 전화 번호부의 발간사업은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²⁸⁾ 한편 이외의 부분에서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Western Electric을 포함하여 AT&T의 수직적 구조는 유지되었다.

V. AT&T 해체의 의의

이상의 내용을 핵심적인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판결'의 의의는 무엇보다 동 판결이 독점금지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²⁹⁾ 종래 AT&T에 의한 독점적 구조는 해

25) Gerald W. Brock, 주 2)의 책, 153면 이하.
26) 지주회사의 재편성에서 모회사로부터 분할하게 된 자회사의 주를 모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7) 552 F. Supp. 131, 226-227 (D.D.C. 1982).
28) 552 F. Supp. 131, 227-228, 232-234 (D.D.C. 1982).

체판결 이후 AT&T나 MCI 등과 같은 장거리통신회사와 7개의 광역에서 전속적인 사업활동을 하게 된 지역별 회사 등이 결합하는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였다.³⁰⁾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으로 구성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³¹⁾ 우선 AT&T의 해체가 서비스 질의 악화와 가격 인상,³²⁾ 국가 방위에 있어서의 결합 그리고 주주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³³⁾ 또한 AT&T의 분리 그 자체도 수직적인 구조를 온존시킨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³⁴⁾ 그러나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미국 통신산업의 구조전환이 경제적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동의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이 이후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동통신이나 데이터통신과 같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의 기초가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³⁵⁾ 또한 현실경제의 전개과정은 AT&T의 분할이 주주에게도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⁶⁾

어떠한 산업에 경쟁구조가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제조건 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따라서 특정한 국가에서의 경험이 무조건적으로 원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29) Noll & Owen은 AT&T의 해체 이전에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독점의 남용, 거래거절, 경쟁자들에 대한 비용압박, 규제기관에 대한 부정적 영향, 비용과 무관한 가격책정 등을 들고 있다. Roger G Noll & Bruce M. Owen, "Antitrust Theories Underlying the MFJ", Thomas G Krattenmaker,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1998, 401-406면.

30) 이를 위하여 해체 이후에 직접적인 가격통제방식의 지양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이 결합되었다. William E. Kovacic, "Designing Antitrust Remedies of for Dominant Firm Misconduct", Connecticut L. R. vol. 31, 1999, 1303면 및 Paul W. MacAvoy & Kenneth Robinson, "Losing by Judicial Policymaking: The First Year of the AT&T Divestiture", Yale J. on Reg. vol. 2, 257면 이하. 한편 경쟁적 구조로의 변화는 시장점유율 추세를 보면, 지역통신시장에서 해체 당시 AT&T 지역별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80%였으나, 1998년에는 69.6%로 감소하였다. 장거리통신시장에서도 해체 당시 시장점유율은 AT&T(90.1%), MCI(4.5%), Sprint Co.(2.7%)였으나, 1998년에는 AT&T(43.1%), MCI(25.6%), Sprint Co.(20.8%)로 변화하였다. 공영일, "미국 통신서비스시장의 구도변화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1권 21호, 1999, 5, 7면.

31) 김정수, 주 2)의 책, 97-100면 참조.

32) Paul W. MacAvoy & Kenneth Robinson, 주 30)의 글, 243면 이하 참조.

33) William E. Kovacic, 주 30)의 글, 1303면.

34) Thomas G. Krattenmaker, 주 5)의 책, 381-382면. 한편 AT&T는 1995년 9월 재분할을 통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Western Electric을 분리시킴으로써, 수직적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게 된다. 이때의 분할은 사업간의 충돌을 조정하려는 경영효율성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城所岩生, 주 381)의 책, 169면 이하). 또한 2001년 7월에는 역시 경영효율성 제고와 조직 재구축(restructuring)의 목적으로 이동통신 부문의 사업체인 AT&T wireless를 분리시켰다(임동민, "AT&T의 조직 재구축계획 추진현황", 정보통신정책, 제13권 13호, 2001, 61-62면).

35) William E. Kovacic, 주 30)의 글, 1303면.

36) 위의 글, 같은 면.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의 AT&T의 해체는 과거 정부에 의해 규제되거나 국공영의 방식으로 운영되던 산업부분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 단지 규제의 철폐나 민영화만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구조전환을 위한 보다 본질적인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공영일, “미국 통신서비스시장의 구도변화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1권 21호, 1999
- 김정수,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일신사, 1996
- 임동민, “AT&T의 조직 재구축계획 추진현황”, 정보통신정책, 제13권 13호, 2001
- 城所岩生, “미국통신전쟁: 신통신법으로 변화하는 구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
- Areeda, P. & Kaplow, L., “Antitrust Analysi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8
- Becker, M. J.,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Walt Saprnov & William Read ed., Telecommunications: Law, Regulation, and Policy, Ablex Publishing Co., 1998
- Kellogg, M. K., Thorne, J. & Huber, P. W.,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 Kovacic, W. E., “Designing Antitrust Remedies of for Dominant Firm Misconduct”, Connecticut L. R. vol. 31, 1999
- Krattenmaker, T. G.,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1998
- MacAvoy, P. W. & Robinson, K., “Losing by Judicial Policymaking: The First Year of the AT&T Divestiture”, Yale J. on Reg. vol. 2, 1986
- Noll, R. G. & Owen, B. M., “Antitrust Theories Underlying the MFJ”, Thomas G Krattenmaker,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1998
- Olufs III., D. W., “The Making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Lynne Rienner Publishers, 1999
- Gerald W. Brock, “Telecommunication Policy for the Information Age”, Harvard Univ. Press, 1994
- Sullivan, E. T. & Harrison, J. L., “Understanding Antitrust and Its Implications 2. ed.,” Matthew Bender, 1994